

# ISA계약만기연장 확인서(은행보관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운용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ISA 주요 내용 고객 확인

고객명(고객번호)		연장 전 계약만기일		연장 후 계약만기일
ISA계좌번호		등록점명(등록점번호)		상담직원명(직원번호)

항목	주요 확인내용
연장자격	<p>본인은 계약만기 연장 시작일 기준 <b>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b>          (외국인인 경우) 본인은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합니다.</p>
연장자격 검증 관련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 시 신규에 준하여 ISA가입요건을 검증합니다.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계약 해지, 연장 불가, 감면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li> <li>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휴대폰 또는 최종 자택주소로 통보되며, 본인은 향후 은행에 등재된 자택주소 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li> <li>② 이외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가입자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하나 은행에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li> </ul> </li> </ul> <p>국세청으로부터 연장 시 신청된 가입유형(비과세한도 등)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연장된 계약만기일까지 통보된 가입유형(비과세한도 등)으로 세제혜택을 적용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기존 가입유형(비과세 한도 등)보다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만기 연장은 계좌 만기 전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 신청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p>
기타 확인사항	<p>납입한도는 총 1억원(기 가입한 재영저축 또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한도와 합산)이이고,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미불 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b>입금시점에 납입한도 초과시 입금(자동이체 포함)이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b></p> <p>계약 만기일에는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며 실제 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모든 자산이매 도되어 현금화된 시점 이후에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 후 연결계좌로 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와 운용자산 만기불일치로 인한 운용자산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본인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정보가 변경없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에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 주셔야 적합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p>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금액/납입한도(재영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저축을 포함)/중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및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합니다.

확인일자 :

고객명 :

서명(인)

대리인명 :

서명(인)



# ISA계약만기연장 확인서(투자자보관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운용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ISA 주요 내용 고객 확인

고객명(고객번호)		연장 전 계약만기일		연장 후 계약만기일
ISA계좌번호		등록점명(등록점번호)		상담직원명(직원번호)

항목	주요 확인내용
연장자격	<p>본인은 계약만기 연장 시작일 기준 <b>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b>          (외국인인 경우) 본인은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합니다.</p>
연장자격 검증 관련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 시 신규에 준하여 ISA가입요건을 검증합니다.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계약 해지, 연장 불가, 감면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li> <li>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휴대폰 또는 최종 자택주소로 통보되며, 본인은 향후 은행에 등재된 자택주소 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li> <li>② 이외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가입자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하나 은행에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li> </ul> </li> </ul> <p>국세청으로부터 연장 시 신청된 가입유형(비과세한도 등)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연장된 계약만기일까지 통보된 가입유형(비과세한도 등)으로 세제혜택을 적용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기존 가입유형(비과세 한도 등)보다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만기 연장은 계좌 만기 전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 신청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p>
기타 확인사항	<p>납입한도는 총 1억원(기 가입한 재영저축 또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한도와 합산)이이고,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미불 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b>입금시점에 납입한도 초과시 입금(자동이체 포함)이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b></p> <p>계약 만기일에는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며 실제 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모든 자산이매 도되어 현금화된 시점 이후에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 후 연결계좌로 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와 운용자산 만기불일치로 인한 운용자산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본인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정보가 변경없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에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 주셔야 적합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p>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금액/납입한도(재영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저축을 포함)/중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및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합니다.

확인일자 :

고객명 :

서명(인)

대리인명 :

서명(인)

